

- 동절기 10:00부터 16:00까지

이상과 같은 규정은 유사조례인 “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” 및 “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”와 같으며 퇴근시간 1시간 전에 개관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정비·정돈하여 다음날 개관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나. 이용방법

- 체험관 이용을 개인이 아닌 10인 이상 단체로 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인 인솔자를 두도록 한 것은 안전상 바람직한 것임.

다. 체험관 이용료

- 어린이 및 노인 그리고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하고
- 기타 별표와 같은 요금 책정은 유사조례인 “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” 및 “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”에서 규정한 요금액과 동일하나,
- 각 조례간 나이 기준과 단체의 정의, 요금의 유·무료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어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무담당관실에서 유사조례의 나이 기준과 요금의 유·무료 등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※ 참고 사항

-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- 어 른 : 19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18세

※ 어린이·노인 : 무료

단체 : 10인 이상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

- 어 른 : 25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24세
- 어린이 : 7세 ~ 12세

※ 어린이:유료, 노인:무료

단체 : 20인 이상

-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

- 어 른 : 19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18세로

※ 어린이·노인 : 무료

단체 : 20인 이상

라. 안 제11조 (보험가입)

체험관의 재산,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,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을 것이며 만약 공무원의 고의,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당연히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한 후 서울시는 고의, 과실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설물의 유지, 관리는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“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, 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상당한 손해를 배상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예산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·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등은 규칙으로 정하며,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방재교육을 수행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.

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월 1일·2일
2. 매주 월요일
3.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

③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하절기(3월~10월) : 평일 10:00부터 17:00까지
공휴일 10:00부터 16:00까지
2.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10:00부터 16:00까지

④ 체험관의 대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2시간전까지로 한다.

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3항의 개관시간 및 제4항의 대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시간 또는 대표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.

제4조(이용대상자) ①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시민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위험물질,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2.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시·도민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방법 등) ① 체험관의 이용은 10인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마다 1인씩 추가되어야 한다.

④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등을 예약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시간 등의 제한)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·회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행위의 제한) ① 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흡연·음주 및 취식
2. 안내요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
3.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
4.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
5.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8조(체험관 이용료) ①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12세 이하 어린이
2. 65세 이상 노인
3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
6.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
7. 기타 시장이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의 체험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반시민에게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체험관 이용권) ①시장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관 이용권을 발행한다.

②체험관 이용권의 규격, 발행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재산 및 물품관리) ①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·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.

②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11조(보험가입)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2조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매점
2. 기념품점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·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체험관 이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 인	단체(10인이상)	
어 른	700원	550원	19세~64세
청소년 및 군경	300원	250원	청소년 : 13세~18세 군 경 : 하사이하 군인, 의무경찰 및 전 투경찰 (의무소방원, 경비교도 포함)
어린이 및 노인	무 료	무 료	12세이하 및 65세이상